

(주)고바이오랩 코스닥시장 상장 수요예측 참가안내

삼성증권㈜는 (주)고바이오랩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의 공동대표주관회사로서 2020년 11월 09일 ~ 11월 10일(2일간) 청약 예정인 (주)고바이오랩의 기명식 보통주 2,400,000주의 공모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요상황(가격 및 수량)을 파악하고자 아래와 같이 수요예측을 실시 하오니 기관투자자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수요예측 유의사항

1. 수요예측 참가기관구분 기입 방법

참가기관 코드	참가기관 구분명	확약서 및 총괄집계표 첨부
01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고위험고수익 제외)	해당사항 없음
02	집합투자업자-고유재산	해당사항 없음
03	해외기관투자자	해당사항 없음
04	상호저축은행	해당사항 없음
05	투자일임업자-고유재산	해당사항 없음
06	투자일임업자-투자일임재산(고위험고수익 제외)	V
07	국내기관투자자	해당사항 없음
08	부동산신탁업자-고유재산	해당사항 없음
09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V
10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V
11	벤처기업투자신탁	V

※ 확약서 및 총괄집계표 첨부에 해당하는 기관의 경우 확약서 양식을 수요예측 참가 화면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날인 후 ssipo@samsung.com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주식시장 상황, 수요예측 참여현황, 수요예측 참여방법 및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 수요예측 운영기준에 따라 배정기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수요예측참가안내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기관투자자는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은 청약일인 2020년 11월 09일(월) ~ 10일(화) 08시 00분 ~ 16시 00분(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삼성증권㈜가 정하는 소정의 주식청약서(청약증거금율 0%)를 작성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 본·지점에서 청약하여야 하거나 당사 홈페이지(<http://www.samsungpop.com>)를 통해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0년 11월 12일(목) 08:00 ~ 13:00 사이에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의 본·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기관투자자의 청약사무취급처는 삼성증권㈜ 본·지점으로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에서는 수요예측을 받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어 있는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접수일시 및 장소

1) 접수일시: 2020년 11월 03일(화) ~ 2020년 11월 04일(수) 17:00까지

2) 접수방법

- ※ 국내기관투자자: 인터넷접수 (삼성증권 홈페이지 www.samsungpop.com)
- ※ 해외기관투자자: 인터넷접수 (삼성증권 홈페이지 www.samsungpop.com)
인편접수, 우편접수, Fax, E-mail 등

3) 문의처

- ※ 국내기관투자자: 삼성증권(주) IPO2팀 02)2020-8442, 7637
- ※ 해외기관투자자: 삼성증권(주) 해외법인본부 02)2020-7414
- ※ 본인명의로 위탁계좌가 없는 국내기관투자자는 삼성증권(주) 지점을 방문하여 위탁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관련 문의는 가까운 삼성증권 지점(1588-2323) 및 본점 Wholesale본부(02-2020-6682)로 연락 바랍니다.
- ※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근거규정: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3. 방 법: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방식

4. 참가자격

가) 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2 조 제 8 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0 조제 2 항제 1 호부터 제 10 호(제 8 호의 경우 법 제 8 조제 2 항부터 제 4 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 13 호부터 제 17 호까지, 제 3 항제 3 호, 제 10 호부터 제 13 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82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 249 조의 6 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 조제 6 항의 금융투자업자 (이하 "투자일임회사" 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 조제 7 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 규정 제 2 조제 18 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 3-4 조 제 1 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이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5 조 제 1 항 제 2 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회사등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9 조의 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7 조제 1 항제 2 호의 4, 제 99 조제 2 항제 2 호의 4, 제 109 조제 1 항제 2 호의 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인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 1 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
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5 제 1 항에 따른 투자신탁등을 말합니다.

①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매 3 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 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 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 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②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2 조 제 18 호에 의거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 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 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 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 14 조제 2 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93 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 91 조의 15 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35 조의 3 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 91 조의 15 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 조제 2 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 91 조의 15 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코넥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①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매 3 개월마다 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균보유비율이 100 분의 2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 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2 조 제 19 호에 의거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배정일까지의 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배정시점에 코넥스 상장주식의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100 분의 2 이상이어야 합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 16 조제 1 항제 2 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대통령령 제 28636 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14 조제 1 항제 3 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 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 (코넥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과 벤처기업투자신탁 자산 편입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하나의 수요예측 참여 유형으로만 수요예측 참여 가능합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

제 16 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 분의 10(제 3 호·제 4 호 또는 제 6 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 천만원 이하분은 100 분의 100, 3 천만원 초과분부터 5 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 분의 70, 5 천만원 초과분은 100 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 분의 50 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 3 항의 경우에는 제 1 항제 3 호·제 4 호 또는 제 6 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8., 2016.12.20., 2017.12.19.>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4 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 16 조제 1 항제 2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9.2.4., 2010.2.18., 2012.2.2., 2018.2.13.>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 251 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 년 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 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 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 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 조제 2 항에 따른 투자
 -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 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제 10 조제 1 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4. 제 3 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 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을 매일 6 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 분의 50 및 100 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 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관투자자 중 마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 조 제 6 항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 2 조제 18 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 1 호 및 제 4 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투자일임회사 등의 수요예측 참여 조건]

- 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2 조제 8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9 조제 4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17 조의 2 제 5 항제 1 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 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전 3 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 억원 이상일 것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상기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코넥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사목에 따른 (코넥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징구하며,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바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징구하며,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2 조 20 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인하는 확인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 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신탁회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고유재산으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주식시장 상황, 수요예측 참여현황, 수요예측 참여방법 및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 수요예측 운영기준에 따라 배정기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수요예측참가 안내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참여제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① 인수회사(공동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2 조제 9 호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동 규정 제 9 조 제 1 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②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2 조제 9 호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을 말하며, 동 규정 제 2 조제 9 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은 제외함)
- ③ 기타 본 건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공동대표주관회사 포함)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 ④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 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17 조의 2 제 3 항에 의거 금번 공모 이전에 실시한 공모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수요예측일 현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분류되어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관투자자
- ⑥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로부터 과거 1 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5 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 2 조제 8 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 가. 제 6 조제 4 항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 나. 영 제 10 조제 3 항제 12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 다. 「사립학교법」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학교법인
 -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2 조제 4 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제 10 조의 3(환매청구권)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 5 조제 1 항제 2 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17 조의 2 제 3 항에 의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수요예측의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 또는 무보증사채의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

㉡ 기업공개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해당 주식을 처분한 자. 이 경우 의무보유기간 확약의 준수여부는 해당기간 중 일별 잔고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 수요예측에 참여하면서 관련정보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자

㉣ 수요예측에 참여시 배정받은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함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1 조를 위반한 자

㉤ 투자일임회사 및 부동산신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5 조의 2 를 위반하여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한 경우

㉥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이 설정일로부터 1 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신탁계약이 해지(신탁계약기간이 3 년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전 3 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

㉦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후 최초 설정일로부터 1 년 6 개월 이내에 환매되는 경우

㉧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호부터 제㉧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주)의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의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17 조 2 에 의거,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주)는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

하며, 협회는 협회 정관 제 41 조에 따라 설치된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서 지정하고,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의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다만,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에 해당 집합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가 발생한 적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해당 집합투자회사에게 협회 정관 제 45 조제 1 항제 4 호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요예측 참여를 허용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주)는 금번 공모를 통해 발생한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는 삼성증권(주)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amsungpop.com>)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의 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외국인투자등록번호
- 명칭
- 해당 사유가 발생한 종목
- 해당 사유
- 해당 사유의 발생일
-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불성실 제재사항 : 불성실수요예측참여 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수요예측 참여 제재

적용 대상	위반금액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미청약·미납입	1 억원 초과	6 개월 + 1 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5 천만원 당 1 개월씩 가산 *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상한 : 24 개월
	1 억원 이하	6 개월
의무보유 확약위반	1 억원 초과	6 개월 + 1 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1.5 억원 당 1 개월씩 가산 *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 개월
	1 억원 이하	6 개월
제 17 조의 2 제 1 항제 3 호 및 제 4 호에 해당하는 사유		12 개월 이내 금지
제 17 조의 2 제 1 항제 6 호에 해당하는 사유		12 개월 이내 금지

제 17 조의 2 제 1 항제 5 호 및 제 7 호에 해당하는 사유	6 개월 이내 금지
주 1) 미청약, 미납입 위반금액 : 미청약·미납입 주식수 × 공모가격 의무보유 확약위반 금액 : 의무보유 확약위반 주식수 X 공모가격 주 2) 의무보유확약위반 주식수 : 의무보유확약 주식수와 의무보유확약 기간 중 보유주식수가 가장 적은 날의 주식수와 차이 주 3) 가중 : 해당 사유발생일 직전 2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00 분의 200 범위 내 가중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2 회인 경우 100 분의 50, 3 회 및 4 회인 경우 100 분의 100, 5 회 이상인 경우 100 분의 200 을 가중할 수 있음. 다만 수요예측 참여제한 기간은 미청약·미납입의 경우 36 개월, 기타의 경우 24 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주 4) 감면 : 1)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그 결과가 경미한 경우 감경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의 원인이 단순 착오나 오류에 기인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재금을 부과하거나 면제(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되 수요예측등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것)할 수 있음 2)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재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의무보유 확약위반 후 사후 수습을 위하여 확약기간 내 해당 주식을 재매수하거나 위반비중이 경미하여 확약준수율*이 70% 이상인 경우 위원회는 확약준수율*이내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감면할 수 있음 주 5) 제재금 산정기준 :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개월수) × 500 만원	

5.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구 분	주식수	비 율	비 고
기관투자자	1,920,000	80.0%	(코넥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 일반청약자 배정분 480,000 주(20.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6. 수요예측 참가 신청수량 최고 및 최저한도

구 분	최고한도	최저한도
기관 투자자	각 기관별로 법령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 (신청수량 × 신청 가격) 또는 1,920,000주(기관배정수량) 중 적은 수량	1,000주

주 1)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시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의무보유 확약여부, 공모 참여실적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 참여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소화할 수 있는 실수요량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 2)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미확약, 15 일, 1 개월, 3 개월 또는 6 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할 수 있고, 확약하는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배정 시 우대할 수 있습니다.

7. 수요예측 참가 수량단위 및 가격단위

구 분	내 용
수량단위	1,000 주
가격단위	100 원

※ 금번 수요예측 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기관투자자는 확정공모가격에 배정받겠다고 의사표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8. 수요예측 참여방법

(가) 국내기관투자자

국내기관투자자의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주)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를 받으며, 서면으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다만, 삼성증권(주)의 홈페이지 문제 등으로 인해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완적으로 인편, 우편, 유선, Fax, E-Mail 등의 방법에 의해 접수를 받습니다. 인터넷 접수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터넷 접수방법]

① 홈페이지 접속

- www.samsungpop.com → 전체메뉴 펼침 → 수요예측

② 로그인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로그인

③ 수요예측 참가 화면에서 종목명을 선택하고 삼성증권(주) 종합(위탁)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참여기관 기본정보 입력(또는 확인) 후 수요예측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요예측 참여 내역은 마감시간 이전까지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최종 접수된 참여 내역 만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 조 제 7 항의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2 조 제 18 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⑤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코넥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각각 개별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그 외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분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고유재산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각각 개별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⑥ 기관투자자가 (코넥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주)가 정하는 '펀드명, 계좌번호, 자산총액, 자산구성내역, 신청금액, 신청가격, 신청수량,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2 조 제 18 호에 따른 (코넥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해당됨을 확인하는 내용' 등을 기재한 (코넥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확약서를 수요예측 참가 화면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날인 후 ssipo@samsung.com 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주)가 정하는 "종목명, 계약일, 만기일, 계좌번호, 자산총액, 신청가격, 신청금액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5 조의 2 제 1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는 내용' 등을 기재한 투자일임업회사 확약서를 수요예측 참가 화면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날인 후 ssipo@samsung.com 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⑧ 벤처기업투자신탁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주)의 홈페이지를 통한 수요예측 참여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2 조 20 호에 해당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벤처기업투자신탁 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⑨ 동일한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각 펀드별 수요를 취합하여 1 건으로 통합신청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코넥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코넥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 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편,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며,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⑩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7 조제 1 항제 2 호의 4, 제 99 조제 2 항제 2 호의 4, 제 109 조제 1 항제 2 호의 4 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수요예측 참가 화면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날인 후 ssipo@samsung.com 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⑪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주)는 수요예측 후 물량배정 시에 당해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전체 물량 (뮤추얼 펀드, 신탁형 펀드 등에 배정되는 물량을 합산한 물량)을 배정하며, 또한, 기관투자자의 (코넥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해서는 1 건으로 통합 배정합니다. 펀드별 물량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업자 및 그 외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합니다. 단, 해당 펀드에 배정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주)와 발행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본인명의로의 위탁계좌가 없는 국내기관투자자는 삼성증권(주) 지점을 방문하여 위탁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관련 문의는 가까운 삼성증권 지점(1588-2323) 및 본점 Wholesale 본부(02-2020-6682)로 연락 바랍니다.

(나) 해외기관투자자

금번 수요예측시 해외기관투자자의 경우 삼성증권(주)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www.samsungpop.com) 및 삼성증권(주) Sales&Trading 부문 Wholesale 본부를 통한 접수를 받습니다. 해외법인본부 접수방법은 직접방문, 우편, E-mail, Fax 등으로 가능하며 우편은 수요예측 마감시간(한국시간 기준 2020년 11월 04일(수) 오후 5시)까지 도착분에 대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접수기간	2020년 11월 03일(화) ~ 11월 04일(수) 17:00
접수장소	삼성증권(주) 10층 해외법인본부, 인터넷(방법은 국내기관투자자 참조)
접수방법	인편접수 혹은 우편접수, E-mail, Fax 등 (인터넷 접수 가능)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1 삼성전자빌딩 10층 해외법인본부
FAX	02) 2020-7426

※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주)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기관투자자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내부 수요예측 운영기준 등에 따라 상기 인수업무규정 제2조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9. 수요예측 접수일시 및 방법

접수장소	접수일시	문의처
삼성증권(주) 홈페이지 (www.samsungpop.com)	2020년 11월 03일(화) ~ 2020년 11월 04일(수) 17:00	02-2020-7637 02-2020-7641

주 1)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수요예측에서 해외기관투자자의 경우 삼성증권(주)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및 삼성증권(주) Sales&Trading 부문 Wholesale 본부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세부내용은 '(6)수요예측 참여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2) 본인명의로 위탁계좌가 없는 국내기관투자자는 삼성증권(주) 지점을 방문하여 위탁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관련 문의는 가까운 삼성증권 지점 (1588-2323) 본점 Wholesale 본부(02-2020-6682)로 연락 바랍니다.

10.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

(가)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정정/취소가 불가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수요예측참여자 중 삼성증권(주)를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삼성증권(주)에 본인 명의의 위탁 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 코넥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각각 구분하여 접수해야 하며 접수 시 각각 개별 계좌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본인명의로의 위탁계좌가 없는 국내기관투자자는 삼성증권(주) 지점을 방문하여 위탁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관련 문의는 가까운 삼성증권 지점(1588-2323) 및 본점 Wholesale 본부(02-2020-6682)로 연락 바랍니다.

(다) 참가신청수량이 각 수요예측참여자별 최고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최고 한도로 참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수요예측 참여시 입력(또는 확인)된 참여기관의 기본 정보에 허위 내용이 있을 경우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하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관리합니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일반 펀드가입자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펀드에서 미청약이나 주금 미납입이 발생한 경우에도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사유발생일 직전 1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제재금 부과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합니다.

또한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법 시행령 제 87 조제 1 항제 2 호의 4, 제 99 조제 2 항제 2 호의 4, 제 109 조제 1 항제 2 호의 4 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인서를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2 조 18 호에 해당하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5 조의 2 의 1 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투자일임회사 협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2 조 19 호에 해당하는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코넥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협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벤처기업투자신탁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2 조 20 호에 해당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벤처기업투자신탁 협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협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마) 집합투자회사가 통합신청하는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동일한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각 펀드별 수요를 취합하여 1 건으로 통합신청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편, (코넥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 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코넥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해당 (코넥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가입자가 대표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사) 수요예측 인터넷 참여를 위한 "사업자(투자) 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기관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자(투자) 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당해 기관투자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은 삼성증권㈜ 「www.samsungpop.com → 전체메뉴 펼침 → 수요예측」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기관투자자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2 조 제 8 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해외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 대상 배정물량 중 미청약된 배정물량에 대해서는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 있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 종료 전까지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카) 수요예측 참가시 의무보유 확약기간을 미확약, 15 일, 1 개월, 3 개월 및 6 개월로 제시가 가능합니다.

(타) 수요예측참가시 의무보유 확약을 한 기관투자자의 경우 기준일로부터 의무보유 확약 종료일 포함 3 영업일 기간까지의 일별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를 의무보유확약기간 종료 후 1 주일 이내에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주) IB 부문 IPO2 팀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제출하지 않은 기관투자자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펀드만기가 의무보유확약기간에 미치지 못해 매도를 하는 경우에도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하오니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전에 해당 펀드의 만기를 확인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파) 의무보유확약기간은 결제일 기준이 아니므로 의무보유확약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매매가 가능하며, 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는 동 기준에 근거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하)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받은 물량을 청약한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청약금액의 1.0%)에 해당되는 청약수수료를 수요예측을 접수한 삼성증권(주)에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는 기관투자자는 삼성증권(주) 담당자와 청약수수료 입금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 납입기일에 청약자가 납입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청약물량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물량에 대하여는 인수회사(공동대표주관회사 포함)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한다.

(너)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주식시장 상황, 수요예측 참여현황, 수요예측 참여방법 및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 수요예측 운영기준에 따라 배정기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수요예측참가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확정공모가격 결정방법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주)과 대신증권(주)은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인 (주)고바이오랩과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격을 결정합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주)고바이오랩은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격 결정시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참여가격은 공모가격 결정시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공모가격 결정시 제외 됩니다.

구분	주요내용
수요예측 결과의 반영 여부	수요예측 참여기관의 참여가격 및 신청수량, 참여 기관투자자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고자료로 활용
공모가격 결정 협의절차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에 수요예측 결과를 제시하고,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공모가격에 대해 협의함
공모가격 최종결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

주)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주), 대신증권(주)와 (주)고바이오랩은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격 결정시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참여가격은 공모가격 결정시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공모가격 결정시 제외됩니다.

12. 물량배정방법

구분	주요내용	비고
----	------	----

구분	주요내용	비고
수요예측 참가신청 관련사항	1) 최고한도 :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잔액 (신청수량 x 신청가격) 또는 1,920,000 주(기관배정물량) 중 적은 수량 2) 최저한도 : 1,000 주 3) 수량단위 : 1,000 주 4) 가격단위 : 100 원 5) 가격 : 가격 미제시 가능 (※ 금번 수요예측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만 제시 하는 참여방법 인정) 6) 기관투자자 의무보유확약기간 적용: 미확약, 15 일, 1 개월, 3 개월, 6 개월	제시된 단위 미만의 수 량 및 가격을 제시한 수요예측 참여는 하위 단위의 수량,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함
배정대상	확정공모가격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를 대상 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함	-
배정기준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자기자본 규모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가중치를 부여하여 자율적으로 배 정함	주)
가격미제시분 및 희망 공모가 범위 밖 신청분의 처리방안	1) 가격 미제시 수요예측 참여자: 해당 기관투자자는 확 정공모가격에 배정받겠다고 의사표시한 것으로 간주. 2) 희망공모가 범위 밖 신청자: 해당 제시 가격을 참여 가격으로 100% 인정	

주)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 시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의무보유확약기간, 참여가격 제시여부, 공모참여실적, 가격 분석
능력, 투자/매매성향,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
량 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 참여 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소화할 수 있는 실수요량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주식시장 상황, 수요예측 참여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내부 수요예측운영 기준에 따라 배정기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
된 상세 내용은 수요예측 참가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과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 자산총액의 100 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물량을 배정하며,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물량을 배정하며,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9 조 제 4 항 제 4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에 한한다)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한편, 수요예측참여자에 대한 물량 배정시 수요예측 참여 대상 물량은 국내외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통합 배정합니다.

13. 배정결과 통보

①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주)는 최종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을 삼성증권(주) 홈페이지(www.samsungpop.com)에 게시하며, 기관별 배정물량은 수요예측 참여기관이 개별적으로 삼성증권(주) 「www.samsungpop.com → 전체메뉴펼침 → 수요예측」에 접속한 후 배정물량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개별 통보에 갈음합니다.

② 수요예측 참여에 의해 배정된 물량을 미청약한 경우에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금융투자협회의 업무관련 홈페이지(<http://work.kofia.or.kr>)에 등록됩니다

